

學問이란 무엇인가?

권용우
법과대학 명예교수

1. 특강을 시작하며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학문(學問)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문’이라고 하니,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연구의 방법도 다양하므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것인지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33년간 대학에서 법학(法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정보·지식재산대학원에서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정리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문하는 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에서는 먼저 ‘학문의 개념과 목적’을 살펴보고, ‘학문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문의 개념과 목적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문의 개념과 목적

(1) 학문의 개념

(가) 학문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가?

(a) 원래 「학문」(學問)이라는 말은 philosophy, 즉 ‘지혜에 대한 사랑’ 또는 ‘앎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의 출발은 자연(自然)에 대한 이론을 탐구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로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Socrates : BC. 470~399)와 플라톤(Platon : BC. 427~347)에 이르러 ‘참다운 앎’을 깨닫는 것을 philosophy, 즉 학문으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시대에 있어서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삶을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양(西洋)에서는 학문이라는 말을 science 또는 Wissenschaft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Science는 라틴어의 Scientia에서 온 말인데, Scio 즉 앎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Wissenschaft도 앎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b)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학문’(學問)이라 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또 실재(實在)하는 존재(Being)를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되고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문연구의 결과가 인류의 평화와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운택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예컨대, 미사일)를 생산해냄으로써 지구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염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의 생산과 같은 과학의 발달은 평화적 이용으로 전환하는 국제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c) 그리고, 학문의 세계는 참으로 넓습니다. 크게 인문과학이니 사회과학이니, 이에 더하여 자연과학이니 하는 큰 테두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좁혀서 문학이니, 법학·행정학·정치학이니 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문학·언어학·고고학·인류학·천문학,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철학·종교·역사·미술·음악·연극·체육·경제·경영·수학·물리·화학,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면 그 영역은 무한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의 세계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롭게 변천해가고 있습니다. 미래학(未來學)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러한 출발은 이한빈(李漢彬 : 1926~2004)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1968년 7월에 창립한 「한국미래학회」(The Korean Society of Future Studies)가 펴낸 학회지 「미래를 묻는다」의 창간호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¹⁾

(d) 한 걸음 더 나아가, 2016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Davos)에서 개최

1) 이한빈 회고록 『일하며 생각하며』, 조선일보사, 1996, 262~263면.

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주요 의제(議題)인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가 화두로 던진 ‘4차 산업혁명’은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인터넷으로 대표되었던 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서 로봇공학(Robot工學)·인공지능(人工知能)·나노기술(Nano技術)·무인자동차(無人自動車)가 등장함으로써 인간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학문의 영역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로봇이나 무인자동차가 사람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대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알파고가 4승1패로 이세돌을 따돌렸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선보인 하나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을 대신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Pennsylvania州)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실험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무인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의 주행을 지켜보면서²⁾ 멀지 않아서 ‘나도 무인자동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한다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요.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 = 학문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 한편, 학문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학문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의학(法醫學)과 같은 학문은 법학과 의학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의 경우에는 법학전공자와 의학전공자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학에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전공이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연구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이론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전공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결과를 창출하는 과정이 학제적 연구입니다.

(나)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a)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는 ‘진리탐구의 자유’를 말하는데,³⁾

2) KBS 1 TV 「월요기획 - 자율주행차, 꿈을 달린다」, 2018년 1월 28일 방영.

이에 관하여는 14세기 말엽부터 16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Renaissance) 이후 정치·종교 등의 여러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데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Bacon, F. : 1561~1626)과 시인 밀톤(Milton, J. : 1608~1674)에 의하여 다시 주창되었으며,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은 1849년의 프랑크푸르트헌법 제152조로 알려져 있습니다.⁴⁾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학문의 자유'를 명문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제헌헌법도 제14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⁵⁾

그리고, 현행헌법은 제2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그리고 제2항에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공권력에 의해서 학문의 자유를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학문은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작업이므로, 이것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간섭이나 방해를 받는다면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思想) 및 가치(價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이므로 이 연구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⁶⁾라고 판시하였습니다.

(b) 학문자유는 주체는 교수나 연구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그 주체가 됩니다. 말하자면, 현재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은 물론 장래에 하기를 원하는 국민도 당연히 학문자유는 주체가 됩니다.

또한, 학문의 자유는 개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학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도 그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대학은 (d)에서 말씀드리게 될 '대학(大學)의 자치(自治)'의 주체입니다.

(c) 학문의 자유는 좁게로는 연구(研究)의 자유와 강학(講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도 포함하는 것이다」⁷⁾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학문발표의 자유는 연구한 결과를 저서나 논문

3)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4) 권영성, 『신판 헌법원론』, 법문사, 1994, 540면.

5)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119·183·209·224·249~250면.

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

7)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밖에 석·박사학위논문도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d) 학문의 자유에는 대학의 자치도 포함됩니다(헌법 31조 4항). 이는 대학이 학문연구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 외부로부터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입시요강과 관련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大學人)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⁸⁾라고 판시하여, 대학의 자치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남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도 대학의 자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⁹⁾

이와는 반대로, 국립대학의 장(長) 후보자추천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방식의 하나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이라는 간선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립적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¹⁰⁾

(e)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서 학문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가, 아니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는 상대적 자유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 중에서 연구의 자유는 외부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희박하므로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에 준할 정도로 고도의 헌법적 보장을 받게 되나, 연구결과발표의 자유라든가 강의의 자유는 사회적 전파성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¹¹⁾

(2) 학문의 목적

(가) 우리는 왜 학문을 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공부를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5,6세가 되면서부터 배움의 길에 들게 됩니다. 신분사회(身分社會)였던 옛날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양반(兩班) 집 남자 아이들은 5,6세가 되면 서당(書堂)에 들어가 천자문(千字文)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학문의 시

8)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결정.

9)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10)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11) 권영성, 앞의 책, 543면; 권순현, 『헌법강의(개정판)』, 형설출판사, 2016, 528면; 김승대, 『헌법학강론(제4판)』, 법문사, 2017, 276면; 김철수, 『헌법개설(제14판)』, 박영사, 2015, 181면; 김학성, 『헌법개론(제4판)』, 피엔씨미디어, 2017, 217면; 오호택, 『헌법강의(제12판)』, 동방문화사, 2016, 244면; 홍성방,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7, 212~213면.

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 선생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는 태어난 지 7개월이 되던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32세의 젊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퇴계는 여섯 살이 되면서 마을 노인으로부터 천자문을 배웠으며, 열두 살 때부터는 안동부사(安東府使)와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지낸 숙부인 송재공(松齋公) 우(塢 : 1469~1517)로부터 논어(論語)를 비롯한 유학(儒學)을 배웠다고 합니다. 퇴계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 시기의 양반들이 학문을 하는 것은 관리(官吏)의 등용문인 과거시험(科擧試驗)에 응시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朝鮮時代)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자제(子弟)들은 이 과정을 거쳐 관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유교적(儒敎的) 관념에서 보면 학문의 목적의 첫 단계는 수신제가(修身齊家)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하여 학문을 닦는다는 말이지요. 『논어』 헌문편(憲問篇)에 “子曰 古之學者는 爲己러니 今之學者는 爲人이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문을 통해서 덕성(德性)을 쌓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의 궁극의 목표는 '자신의 인격완성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성리학(性理學)이 추구하는 선비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또, 퇴계와 더불어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율곡(栗谷) 이이(李珥 : 1536~1584) 선생의 학문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은 1577년(宣祖 10년) 그가 42세 때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술한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서문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人生欺世에 非學問이면 無以爲人也)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학인(無學人)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머리에 “처음으로 학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뜻을 세우는 일이다”(初學에는 先須立志하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그가 20세 때 쓴 『자경문』(自警文)의 첫 머리에도 '입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곡의 학문하는 자세였습니다.

(나)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남녀 누구나 7,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배움의 길'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중·고등학교에, 또 대학에 진학하여 배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문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좁게로는 개인의 자기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학문에 온힘을 쏟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하여, 또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학문에 정진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좀더 눈을 넓혀서 바라보면, 각 개인들이 학문에 정진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발전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5일에는 연간무역(年間貿易) 1조(兆)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무역(貿易) 아홉 번째’의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연간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 등 8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은 1948년 건국한 지 63년, 1962년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세우고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년만의 경사였습니다. 1962년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액(貿易額)은 4억7,800만 달러로서, 세계 65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6·25전쟁이 끝나던 1953년 1인당 국민소득(國民所得)이 60달러에 불과했는데, 그로부터 반세기(半世紀)가 조금 지난 201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591 달러로 급성장하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3일에는 ‘20-50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여기 ‘20-50 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23일에 1인당 국민소득 2만3,680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까지 ‘2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일본(1987년)·미국(1988년)·프랑스(1990년)·이탈리아(1990년)·독일(1991년)·영국(1996년) 등 6개국이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頂上會議)를 개최하고, 그 의장국으로서 당당하게 세계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OECD의 개발원조기구(DAC)에 가입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없이 배움=학문에 정진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의 힘은 참으로 강한 무기입니다.

(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학문하는 목적을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든지,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곧 공부 = 학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곧 공부 = 학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 = 학문하는 것은 학자나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공부 = 학문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부단히 공부 = 학문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교육(平生教育, life-long education)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학교교육(學校教育)을 통해서만 공부 = 학문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현대는 ‘평생학습(平生學習)의 시대’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

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쉽없이 공부 = 학문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이나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도 제31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평생교육법(종래의 사회교육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을 부설하여 개인의 능력계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죽전과 천안 양캠퍼스에 평생교육원을 두고 도예 · 생활건강 · 생활예술 · 생활외국어 · 생활음악 · 화훼조형학 · 태권도학 · 사회복지학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¹²⁾

(라) 공부 = 학문을 말하려면,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Lincoln, A. : 1809~1865)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동안 독학(獨學)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말을 좌우명(座右銘)으로 삼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 전에 정신과(精神科) 의사인 이시형(李時亨) 박사가 쓴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펴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적(創造的) 공부’ 얘기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不確實性) 시대에서는 ‘창조적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창조적 인재(人材)’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의 체험과 깊은 통찰력에 의해서 저술된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문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Descartes, R. : 1596~1650)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위인(偉人)들과 담소(談笑)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명언입니다. 또, 조선 제21대 왕 영조(英祖 : 1724~1776)는 “나라를 유지하는 힘은 책에 있다”라는 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서는 학문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틈틈이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꿈을 하나 하나 이루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 학문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2) 『단국대학교 70년사 II』, 2017, 512~521면.

(1) 전통적 학문과 그 연구

(가)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라!”(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움’, 곧 학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문의 길’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인류의 스승 공자(孔子 : BC. 552~479)는 『논어』 술이편(述而篇)에서 “배우는 데 싫증을 느끼지 말고, 남을 가르치는 데 게으리지 말라”(學而不厭하며 誨人不倦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맹자(孟子 : BC. 372~289)도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學不厭教不倦)라는 귀한 교훈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역시, 학문에 관하여 말하려면 그 첫 손가락에 공자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는 나이 열 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열 다섯 살에 이미 학문에 뜻을 두고 끊임 없이 연마하였으니, 서른 살에는 이미 학문에 일가(一家)를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부지런히 학문을 닦으면 각자의 분야에서 정상(頂上)에 오를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논어』 계씨편(季氏篇)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어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이 최상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요, 곤란해져서 배우는 사람이 또 그 다음이요, 곤란해져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최하등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선인(先人)들은 배움 = 학문하는 것을 이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철학자 안병욱(安秉煜 : 1920~2013)도 “인간은 날마다 배워야 한다”(日日學)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¹³⁾ 그리고, 그의 글 중에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Goethe, J. W. von : 1749~1832)가 남긴 명언, “가장 유능한 사람은 부단히 배우는 사람이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¹⁴⁾

(나) 옛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학문은 어떠했습니까?

(a) 조선은 유학(儒學)을 이념으로 건국하였는데, 이에 터잡아 중앙에 성균관(成均館)을 두어 유교적(儒敎的) 소양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려(高麗) 충선왕(忠宣王 : 1309~1313) 때에 유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는데, 조선시대에 계승되었습니다.¹⁵⁾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국립대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국가에서 학전(學田)과 노비(奴婢)를 지급하여 운영토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는 생원(生員)·진사(進士) 등 사마시(司馬試) 합격자가 입학하였는데, 정원은 대개 100명 정도였습니다.¹⁶⁾

13) 안병욱, 『사람답게 사는 길』, 자유문화사, 1996, 47면.

14) 위의 책, 48면.

15)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7, 1983, 214면.

16) 위의 책.

(b) 한편, 하급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학당(學堂)을 두었으며, 지방에는 향교(鄕校)를 두어 인재(人材)를 양성하였습니다. 이 때, 학당과 향교는 관리(官吏)의 등용을 위한 과거제도(科擧制度)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반(兩班)의 자제들은 어릴 때 서당(書堂)에 들어가 한문(漢文)의 초보와 습자를 배운 뒤에 학당이나 향교에 진학하였습니다.

① 학당은 1261년 고려(高麗) 원종(元宗 2년) 때에 동서학당(東西學堂)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어 동부학당·서부학당·중부학당·남부학당의 4부 학당을 두었습니다.¹⁷⁾

② 향교는 고려 인종(仁宗 : 1123~1146) 때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조선시대에 각 지방관아(地方官衙)의 관할하에 설치하여 유생(儒生)들을 교육하였습니다.¹⁸⁾

그런데, 1894년(高宗 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단행되면서 과거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학당이나 향교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당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지방의 향교는 선현(先賢)에 대한 제향(祭享)을 통한 교화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c) 이 밖에 명현(名賢)을 제사하고 인재(人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국 곳곳에 사설기관인 서원(書院)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① 서원의 시작은 1543년(中宗 38년) 경상도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 : 1495~1554)이 순흥(順興)에 고려말(高麗末) 유현(儒賢)인 회현(晦軒) 안향(安珦 : 1243~1306)의 사묘(祠廟)를 세우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고 이름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후, 1550년(明宗 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부임해 와서 조정(朝廷)에 건의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액서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학전과 노비를 내려주고, 이에 대한 면세(免稅)와 면역(免役)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는데, 점차 혈연·지연이나 학벌·당파 등과 연결되어 이익집단화(利益集團化)하는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의 특권을 남용한 학전의 증가로 국고수입(國庫收入)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② 그런데, 숙종(肅宗 : 1675~1720)을 거치면서 철종(哲宗 : 1850~1863)에 이르러 서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전국의 서원의 수가 670여개소에 이르렀습니다.¹⁹⁾ 이로써 그 폐단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는데, 1871년(高宗 8년)에 사액서원 47개소만을 남기고 전국의 모든 서원을 철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²⁰⁾ 이 때, 서원을 철폐한 해가 신미년(辛未年)이어서 이 때 살아 남은 서

17)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6, 1983, 71~72면.

18)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30, 1984, 90면.

19) 이선근, 대한국사 6, 신태양사, 1973, 27면.

20) 앞의 책, 27~32면; 이기백, 한국사신문(개정판), 일조각, 1977, 313면; “다시 세운 왕권 - 대원군의 등장”, 한국현대사 1, 신구문화사, 1969, 34~35면.

원을 ‘신미존치(辛未存置) 47서원(書院)’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²¹⁾

(2) 대학과 학문연구

(가)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학문’을 말하려면 먼저 대학(大學)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학’은 학문의 연구를 사명으로 하는 학자와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가리켜 ‘학문의 전당(殿堂)’이라고 일컬었고, 또 대학은 순수학문을 지향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상아탑’(象牙塔)이라고도 합니다.

영국의 계관시인 존 메이스필드(John Masefield : 1878~1967)는 “대학은 지상(地上)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가리켜 ‘학문의 전당’이니, ‘상아탑’이라는 말은 아주 잘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대학의 출발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1945년 8·15 광복(光復) 후 서울대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많은 사립대학이 개교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1922년 11월에 이상재(李商在)·한규설(韓圭髙)·한용운(韓龍雲)·김성수(金性洙)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민립대학(朝鮮民立大學)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였으나, 일제(日帝)의 압력에 부딪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보성전문학교·연희전문학교·혜화전문학교·명륜전문학교·이화여자전문학교 등이 일본의 무단정치(武斷政治)에 맞서 교육구국(教育救國)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불과하였습니다.

(나) 그러다가, 1945년 광복이 되면서 4년제 대학이 개교하면서 ‘학문연구의 길’을 크게 열어갔습니다.

이 때, 대학이 개교하는 형태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전문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설치법령에 의하여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동국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전자에 해당되고, 그 밖의 대학들은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설립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45년 8·15 광복 직후 미군정(美軍政)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이른바 ‘國大案’)이 발표되면서 찬·반 논쟁이 과열됨으로써 개강을 앞두고 있던 대학가(大學街)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좌·우익의 이념대립으로 발전되면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운 과정이었습니다.²²⁾

21) 김봉렬, 『서원 건축』, 대원사, 2006, 62면.

22) 김치선, “서울대 법대 학장 고병국”, 『한 시대의 이단자들』, 조선일보사, 1985, 186~187면.

(다) 서울대학교의 설립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많은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은 광복된 나라에서 가장 긴요한 과제는 내일의 조국을 이끌어갈 인재의 양성에 있다고 믿고, 대학의 설립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a) 건국대학, 국민대학, 국학대학, 단국대학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만주(滿洲) 등지에서 독립운동(獨立運動)에 몸과 마음을 바치셨던 범정(梵亭) 장형(張炯) 선생과 육영(育英)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셨던 혜당(惠堂) 조희재(趙喜在) 여사께서 미래는 교육이라는 일념으로 1947년 11월 3일 단국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의 창학이념은 국가관·민족관·세계관을 담고 있는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이며, 교육목적은 정신적 지표인 진리(眞理)와 행동적 지표인 봉사(奉仕)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목표는 ‘민족애(民族愛)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전문인(專門人) 양성’이며, 실천전략으로 인간화·첨단화·세계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1947년 단국대학이 설립될 무렵은 일제(日帝)에 의하여 35년간 무단정치의 억압에서 벗어난 시점이어서 배움에 굶주린 젊은이들에게는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국대학 설립취지서가 배움에 굶주린 젊은이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단국대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요구와 인류의 세계적 요망에 대응하기 위하여 5천년 유구한 문화를 여기 재흥하고 만인공영(萬人共榮)의 진리를 부흥하여 …… 세계인류의 영원한 자주적 독립과 발전변영을 기도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정신(建國精神)을 여기에 광복하는 선도자(先導者)와 창계자적(創系者的) 역할을 메고 나갈 문화사관(文化士官)을 양성하여 ……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배들이 길이 그 진리를 찾고 일을 배우고 글을 닦아 진(眞)과 선(善)과 미(美)의 참된 일꾼이 여기에서 나고 여기에서 비롯하기를 기하여 한 개의 글집을 세우는 것이다”²³⁾ 라고 쓰고 있습니다.

(b) 단국대학의 설립취지서는 뒷 날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법 제2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9조 제1항에서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23) 단대학생신문 1948년 3월 1일, 1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여러분들은 학문의 꿈을 안고 우리 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에 입학하여 ‘배움 = 학문의 길’에 들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공자(孔子)는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지락(至樂)”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진리(眞理)가 무엇인가?’를 찾아나셔야 합니다. 진리를 찾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N. : 1473~1543)의 지동설(地動說)에 얽힌 사연을 다 알고 있지요. 그는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 K. : ?~?)가 주창한 천동설(天動說)을 뒤집는 이론인 지동설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동설은 1632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Galilei, G. : 1564~1642)에 의하여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성서(聖書)와 지동설과의 모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강학함으로써 로마 교황청(敎皇廳)으로부터 반발을 받게 되었지요. 이것으로 하여 갈릴레이는 재판에서 “앞으로는 지동설에 대하여 일체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학문하는 자세는 종교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력이나 재물에 귀를 기울리면 안 됩니다.

(3) 학문연구의 방법

(가) 이제부터 석·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중심으로 학문연구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문연구의 결과가 저서나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다르지만 석·박사학위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경우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 석·박사학위논문은 어떻게 쓰여지게 됩니까? 석·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특정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작성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한편의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석·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그런데, 석·박사학위논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제의 선정 → 자료의 수집 → 자료의 분석 및 정리 → 논문작성의 계획수립 → 논문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의 선정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에 관하여 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구자가 평소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의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 범위가 좁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깊이 있는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성·독창성·유용성을 가진 주제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외의 연구동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료의 수집입니다. 연구의 주제가 선정되면 이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자료의 수집은 좋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1단계의 작업입니다.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논문을 작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작성에 있어서는 문헌자료가 중심일 것입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실태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나 면담을 통해서 확보된 정보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 2월에 “전당포영업법상의 질권제도”라는 주제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때 실태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214개(1969년 10월 기준) 영업전당포 중 각 지역별로 표준이 된다고 생각되는 8개의 전당포와 5개의 공익전당포를 대상으로 하고, ‘전당포(典當舖)가 서민의 소비금융기관으로서 유용한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²⁴⁾ 이처럼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법학의 연구는 ‘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법사회학적(法社會學的) 연구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리히(Ehrlich, E. : 1862~1922)와 베버(Weber, M. : 1864~1920)가 강조한 ‘살아 있는 법’(lebendes Recht)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⁵⁾ 법이란 사회현상의 하나이므로,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법을 탐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학분야의 논문작성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은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일반적인 합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재판이 반복되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판례법이 성립하게 됩니다.²⁶⁾ 따라서, 이러한 판례법은 법학분야의 논문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학연구는 종래에는 일본·독일식의 이론 중심의 연구에 머물렀는데, 요즘에 와서는 영·미식의 판례연구, 즉 Case Method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례연구를 통해서 법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²⁷⁾ 그리고, 판례연구는 위에서 본 법사회학적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 권용우, “법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단국대학교 지식재산·정보보호법 사업단 전문가 초청 특강자료, 2015, 19면.

25) 권용우, “법사회학의 방법론적 기초의 확립”-막스 베버의 사상, 단대신문, 1982. 11. 8, 3면.

26) 권용우, 앞의 “법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3면.

27) 양승규, “판례연구와 법학교육”, 민사판례연구(1),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399면.

셋째, 자료의 분석 및 정리입니다. 논문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되면, 그것을 저서(단행본)·논문(학위논문 포함)·연구보고서·전자문헌·실태조사의 분석·판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단계를 거친 자료는 논문작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정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드로 작성한다거나 스크랩 북·봉투 파일을 만들면 보관도 쉽고 활용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논문작성의 수립계획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었다면, 논문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논문개요를 작성하고, 주제의 범위내에서 쓰고자 하는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논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가설(hypothesis)을 설정해둠으로써 결론에 도달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주제의 중요성, 국내외의 연구동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추진 일정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논문의 작성입니다. 이것은 석·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석·박사학위논문에는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① 논문은 서론·본론·결론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연구주제의 의의 및 성격과 이것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왜 중요한 것이냐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를 밝혀야 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② 다음으로 본론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서론에 제기한 문제들을 논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석·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본론의 분량이 긴 것이 보통이므로, 장·절의 구분을 해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장·절의 명칭은 논문주제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마치 역피라미드처럼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장과 장 사이, 절과 절 사이에 유기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논증은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그리고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타인의 저서나 논문을 인용하거나, 반증(反證)을 제시하고 아울러 자기의 주장을 소개해야 합니다. 또, 통계자료를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본론의 내용이 광범위할 때에는 적절하게 항목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그에 대한 ‘소결론’을 내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③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논증한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중에 미해결의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장래의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를 지적하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논증한 내용과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능한 한 짧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 끝으로 석·박사학위논문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장의 표현은 정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이 평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논문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용어의 선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법학논문에서 법률용어의 선택이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법률용어의 선택을 위해서 『법률용어사전』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둘째, 철자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8. 1. 19)에 따라야 합니다. 철자법이나 띄어쓰기에 잘못이 있으면 논문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독자가 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문장부호도 석·박사학위논문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 1. 19)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온점(.), 반점(;), 가운뎃점(·), 쌍점(:), 물음표(?), 빗금(/), 작은 따옴표(‘ ’), 큰 따옴표(“ ”), 대괄호(〔 〕), 줄표(-), 물결표(~), 줄임표(……), 빠짐표(□), 숨김표(XX, OO) 등입니다.

넷째, 외래어나 외국어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래어의 표기는 문교부가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고시 제85-11호, 1985)에 따라야 합니다. 또, 외국어의 표기는 ‘로마자 표기용례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섯째, 약어나 약칭은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Public Relations를 PR로, United Nations를 UN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통용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약어나 약칭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리 ‘약어표’(略語表)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학의 경우에는 라틴어로 된 약어가 많이 있는데, 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은 논문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타인의 저서나 논문을 인용(quotation)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인용은 ‘남의 글’을 빌어온 것이므로, 그 사실을 주(註)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표절 시비 내지 저작권 침해라는 오명을 벗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즈음에는 주로 각주(脚註, footnote)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이 때, 본문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주 번호를 표시하고, 그 페이지의 하단에 분리선을 두고 그 아래에 번호를 부여

한 다음 인용한 문헌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대개 석·박사학위논문을 제출받는 대학에서 미리 정해놓은 매뉴얼을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일곱째, 법학논문에 있어서 법령(法令)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전문을 정확하게 옮겨 적고, 반드시 ‘무슨 법 몇 조’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민법은 법원(法源)에 관하여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써야 함과 같습니다.

여덟째, 법학논문에 있어서 판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선고법원, 판결을 선고한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판결·결정)의 종류의 순으로 기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컨대, “대법원 2017. 5. 25. 선고, 2016다525 판결”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인 경우에는 “대법원 2017. 6. 25. 선고, 2006다625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의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적으면 됩니다.

또, 1989년 헌법재판소가 새로이 출범함으로써 헌법에 관한 쟁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학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바25 결정”과 같이 표기하면 됩니다.

아홉째, 논문에 표나 그림이 있는 경우에는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표시하고, 본문에서 이를 인용할 때는 <표 1>에서, 또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표나 그림의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나 그림이 타인의 저서나 논문에서 인용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열째, 일반적으로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마지막 부분, 즉 결론 다음에 참고문헌(Bibliographies)을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논문작성에 참고한 문헌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논문을 제출한 대학에서 미리 정해둔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문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연구자를 위한 자료제공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고문헌은 위에서 본 각주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참고문헌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서(books), 논문(articles), 평석(commentaries)의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국내 문헌의 경우는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의 경우는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열한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부록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실태조사라는 연구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설문지(設問紙)가 부록으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4. 특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의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특강주제를 ‘학문이란 무엇인가?’로 정하고, 학문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학문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전공 분야가 법학이고 보니, 주로 이 범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밖에 인문 과학이나 자연과학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문연구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보·지식재산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석·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특강자료를 기본틀로 해서 좀더 공부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교(儒敎)의 경전(經典) 중의 하나인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학문하는 방법과 태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널리 배우고(博學之하고), 자세히 묻고(審問之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愼思之하고), 밝게 변별하고(明辨之하고), 독실하게 행할 일이다(篤行之니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박학(博學)·심문(審問)·신사(愼思)·명변(明辨)은 앎에 이르는 길이며, 독행(篤行)은 앎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배움 = 학문하는 것의 참다운 의미는 실천에 옮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특강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